

우편물 정기 발송계약서

「우편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_____우체국장(이하 ‘해당 우체국장’ 이라 함)과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이하 ‘이용자’ 라 함)는 다음과 같이 정기간행물의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는다.

제1조(정기간행물의 내용) 이용자의 우편물로 정기 발송할 정기간행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호		등록번호 및 일자	
종 별		간 별	
발 행 인		발 행 소	

제2조(우편물의 발송) 이용자는 제1조의 정기간행물을 다음과 같이 해당 우체국장에 우편물로 접수하여 발송한다.

배 달 지 역		1회 발송물수		정기발송일	
---------	--	---------	--	-------	--

제3조(우편요금의 감액) 해당 우체국장은 이용자가 계약 내용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시에서 정한 감액률을 적용하여 접수한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신고) 이용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한 계약내용의 변경신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이용자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할 때에 해당 우체국장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우편물의 제출요건과 형태) 이용자가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한 우편물의 제출요건과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해당 우체국장이나 이용자가 계약의 해지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1년간 연장된다.

② 해당 우체국장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의 계약 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재계약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석)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우체국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그 밖의 사항)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 내용과 관련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변경된 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되는 고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된 고시내용에 따라 ‘7조(계약기간)’ 과 관계없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우체국장 (인)

(인)